

#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94. 7. 19

내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달서구청장

나. 제출일자: 94. 7. 12

다. 회부일자: 94. 7. 12

라. 상정일자: 94. 7. 18

## 2.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역

○ 추가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 산 소 유 자 주소, 성명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계			964 <sup>29</sup>	710,000			
1	대 지	달서구진천동 831-5	212	192,000	4/4	월배3동 경로당부지	달 서 구 진 천 동 831-5 성 규 대
2	"	달서구두류동 804-125	261	284,000	"	두류1동 경로당부지	달 서 구 두 류 동 804-125 황 순 남
3	건 물	달서구진천동 831-5	188 <sup>28</sup>	108,000	"	월배3동 경로당활용	달 서 구 진 천 동 831-5 성 규 대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, 성명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4	"	달서구두류동 804-125	138 <sup>01</sup>	15,600	4/4	두류1동 경로당활용	달 서 구 두 류 동 804 - 125 황 순 남
5	"	달서구두류동 486-2	165	110,000	"	내당아파트 경로당신축	신 축

3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재무과장 민경철)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,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 
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요청

○ 경로당 부지 및 건물의 동시매입과 아파트 부지내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등 3건으로서 노인  
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며 변경 내용은  
첫째 : 진천동 831-5번지 대지 212㎡, 건물 188.28㎡를 매입하여 월배3동 경로당으로 활용코  
자하는 것으로 진천동 830번지 일대는 단독택지지구로 월배2동과 월배3동 경계지역으  
로 노령인구는 100여명 정도이나 인근에 경로당이 1개소도 없으며 1km정도 떨어진  
월진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  
으며 또한 월진경로당 회원수 100여명에 수용능력도 100여명으로 이용에 부족함이 많  
음.

둘째 : 두류1동의 경로당 시설은 두류동 1213번지에 위치한 동사무소옆 소공원부지에 1개소  
가 있으나 시설이 낡고 협소하며 관내 전 노인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수용능력  
이 부족하고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이곳에 경로당 1개소를 더 마련코  
자 두류동 804-125번지, 대지 261㎡, 건물 138.01㎡를 동시 매입코자 함.

셋째 : 두류3동 내당아파트내 경로당은 1980년에 건립된 블럭스레트 건물로 천정누수, 벽 파손등 시설이 극히 낡은 사실 경로당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임. 이지역은 여건상 주택밀집지역으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한 적정 나대지선정이 어렵기에 내당아파트내 부지 두류동 486-2번지에 건물 165㎡를 신축하여 노인 인구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마련코자 함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백창기)

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은 월배3동, 두류1동, 두류3동의 경로당 물건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의결사항임.

첫째 : 월배3동 경로당 설립에 대하여는 위치적으로 볼때 진천동 830번지 일대와 월배2동과 경계지역으로 노인들이 1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,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는 1km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노인들이 여가 선용할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인 바 진천동 831-5번지 물건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둘째 : 두류1동 경로당을 설립코자하는 주변 여건은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두류1동 전체 노인 인구 470명 중 32%를 차지하는 1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,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노인들이 여가선용할 장소가 없는 실정인 바 두류동 804-125번지 물건을 매입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으로 활용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셋째 : 두류3동 경로당 건립지는 현재 내당아파트내 1980년에 건립된 경로당으로서 블럭스레트 건물로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우천시 비가 새고 벽이 파손되어 사실상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,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두류3동 전체 노인 인구 630명중 32%를 차지하는 2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,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는 600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현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토론요지

○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와 무관하게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특별교부금사업 명목으로 상부에서 지시되어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하게 함으로서 달서발전 5개년계획 추진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불합리한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므로 사회복지분야 시설투자는 기 제정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.

(이재영위원)

○ 기존 관리계획중 대지까지 승인 확보된 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미루고 또 다른 지역에 새로이 대지 및 건물매입취득 승인을 요청한 점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.

(류광현위원)

○ 두류3동의 내당아파트내 경로당 건물신축계획은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사전동의를 득하여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. (류병노위원)

- 전체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승락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. (가정복지과장 손문숙)
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은 건립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내실을 기하여 운영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람. (한정수위원)

○ 동 계획변경안은 예산편성후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구의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일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부결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,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것임.

(우승기 위원장)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.

8.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승인내역

○ 추가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 재산 소 유 자 주소, 성명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계			964 <sup>29</sup>	710,000			
1	대 지	달서구진천동 831-5	212	192,000	4/4	월배3동 경로당부지	달 서 구 진 천 동 831-5 성 규 대
2	"	달서구두류동 804-125	261	284,400	"	두류1동 경로당부지	달 서 구 두 류 동 804-125 황 순 남
3	건 물	달서구진천동 831-5	188 <sup>28</sup>	108,000	"	월배3동 경로당활용	달 서 구 진 천 동 831-5 성 규 대
4	"	달서구두류동 804-125	138 <sup>01</sup>	15,600	"	두류1동 경로당활용	달 서 구 두 류 동 804-125 황 순 남
5	"	달서구두류동 486-2	165	110,000	"	내당아파트 경로당신축	신 축